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4
----------	------

발의연월일 : 2020. 6. 30.

발 의 자 : 김성주·홍익표·권철승  
송옥주·고영인·김수홍  
강병원·강선우·전용기  
윤준병·이용호·한병도  
최혜영·양향자·이원택  
김윤덕·안호영·김원이  
이상직·신영대·허종식  
의원(2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선진국 못지않은 의료인·의료기술 수준을 갖추었으나,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균질하게 누리고 있지 못한 실정임. 정부에 따르면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 도시에 집중되어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가 심각함.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수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및 지역 외상응급기관 등에 의사공백 문제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됨.

뿐만 아니라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의 양극화 심화로 내과·외과·소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의 필수 전문과목에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사스·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인 유행이 주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나,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인력은 오히려 부족한 실정임.

실례로, 2020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역학조사관 133명 중 의사출신 인력은 25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감염병 검역의 최초 관문인 주요 공항에도 인력 부족으로 공중보건 의사가 일부 배치되고 있는 상황임.

코로나19의 재유행(2nd wave)뿐 아니라 향후 유사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금부터라도 장기적 전망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큼.

대한감염학회도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 가능성 대비와 치명률 감소를 위해 의료진 확보, 병상확대, 전원 시스템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짐. 이에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체계를 갖추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 졸업한 의료인력에 대한 의무복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목적(안 제1조)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 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함.
- 2)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3) 임원은 총장 및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로 구성함.
- 4) 학교의 장(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함.
- 5) 이사(임기 2년), 감사(임기 3년), 이사회(이사장, 구성 및 기능)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함.
- 6) 교직원은 정관에 따라 총장이 임면하고,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및 징계 등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함.

7)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의학전문대학원, 보건대학원 등을 둘 수 있음.

다.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안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 1) 학위과정을 규정하고 과정별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2) 입학자격, 학생선발 방법 등을 규정함.
- 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함.
- 4)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함.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실습기관을 갖추어야 함.
- 6)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의무복무 기간에서 전문의 수련 기간의 일부를 인정함.
- 7) 복지부장관은 매년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의사의 의무복무 기관에 배치절차, 근무지역 변경절차 등을 정함.
- 8) 의무복무 실적 보고의무 및 매년 총장의 졸업생 실태 파악 의무를 규정함.
- 9) 의무복무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우선 채용 및 국제기구 파견 우선 선발 근거를 둠.
- 10)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의무복무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재발급을 금지함.

라. 국·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회계 등(안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 1) 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허용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용지 확보 필요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2)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근거를 두고, 수익사업을 허용함.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을 지원하도록 함.
- 4) 법인회계의 설치, 예·결산서 제출 및 공시의무를 규정함.

마. 지도·감독 및 벌칙(안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 2)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3)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医료를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4조(법인격)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설립등기) 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관) 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총장 및 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총장은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총장과 감사는 상근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총장) 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총장의 선출) ①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사로 본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총장

2.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4.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5.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1명
  6. 그 밖에 의학교육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이사회) 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그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되, 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이사장이 궐위(闕位)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이사회 소집 등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교직원의 인사와 보수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및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10. 이 법이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감사) ①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이

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그 밖에 정관으로 감사의 직무로 정하는 일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이사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 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교직원 등) 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

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③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④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제16조(대학원의 설치) 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전문대학원으로 한다.

②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학위과정 등) 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박사 및 석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학위수여) 총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

계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9조(입학자격) 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20조(학생선발) 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생은 제19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② 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제1항에 따라 선발할 때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의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③ 그 밖에 학생정원, 학생 선발일정 등 학생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학비 등의 지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학비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원한다.

제22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21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비등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학 중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사람
2.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4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만, 제30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질병, 심신의 장애,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반환금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에게 기한을 정하여 반환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총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반환금의 납부,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교육·실습기관) 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실습기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의학교육 및 임상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실습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2. 그 밖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교육·실습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제24조(의무복무) ① 제18조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를 하는 사람(이하 “의무복무의사”라 한다)은 그 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질병 등에 따른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되려는 의무복무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수련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 중 전문의 수련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무복무 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2. 보건복지부
3. 질병관리본부
4. 시·도
5. 그 밖에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관련 국제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무복무 기관에 배치 등) ① 의무복무의사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도별로 선발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매년 의무복무의사의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고 시·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의사는 선발된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및 배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의무복무의사가 근무할 지역 및 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배치된 의무복무의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해당 의무복무 기관의 보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의사의 배치의 시기,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무복무 지역의 변경 등) ① 시·도에 배치된 의무복무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역을 다른 시·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의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배치된 의무복무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제25조 각 호 중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배치기관의 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치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의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 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복무의사를 다른 지역의 의무복무 기관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 내의 파견명령은 해당 시·도지사가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의무복무의사의 파견을 명한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근무지역의 변경 및 파견의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무복무 실태 보고 등) ① 의무복무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하 “의무복무기관장”이라 한다)은 의무복무의사의 근무실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무복무의사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의사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총장은 매년 졸업생 조사를 통하여 의무복무를 포함한 졸업생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의무복무기관장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졸업생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9조(의무복무의사 등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배치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30조(의사 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복무의사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제24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아니한 잔여기간 동안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제31조(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

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공보

건의료대학의 학교용지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수익사업 등) 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학교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그 설립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 및 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비의 보조, 장학금의 지급, 학비 등의 보조 및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법인회계 등) 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그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이 있은 후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38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 선발, 실습·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지

도·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아닌 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1조(「민법」의 준용)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과태료) ① 제38조를 위반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 당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총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사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 총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준비행위로서 행한 부지매입 및 설립준비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교원

1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직원 및 조교